(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공고 제 2023-3호

2023년 광주·전남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

광주·전남 지역의 융합형 비즈니스 활성화 제고를 위한 협력산업(신재생에너지 기반 지능형전력시스템) 생태계 조성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2023년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기업지원" 수혜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3일

광주지역사업평가단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기업지원
- 지원목적
  - 축적된 가치사슬 내 새로운 생태계 조성
  -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육성을 통한 지역혁신성장실현
  - 신에너지 요소기술 및 에너지 효율화 향상 등 비즈니스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화 및 기술 지원
- 지원기간 : 2023.05.01. ~ 2023.09.29.(프로그램별 상이)
- 지원내용 : 제품고급화, 글로벌 마케팅, IP R&D, 인증, 홍보, 사업화 전략
- 지원기관 :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재)전남테크노파크

2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광주·전남 소재의 사업장(본사, 공장①, 연구소②)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③
  - ①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 ②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 신청과제 검토(부합성, 중복성, 참여제한, 의무불이행, 재무건전성 등)시 사전지원제외 미해당 중소·중견기업

○ 협력산업(신재생에너지기반 지능형전력시스템) 분야 대상

- 정의 :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 전력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 취득, 보호제어, 전력변환, 시스템 운용 기술 등의 소재부품, 기기, 설비, 제품, 시스템, 서비스

3 지원내용

지원프로그램	세부내용	지원규모 (VAT 제외)
제품고급화	▸제품 성능개선 등을 위한 고급화 지원 및 애로기술 해소 지원	최대 10,000천원/건
인증	▸제품 성능인증 및 제품등록 지원	최대 10,000천원/건
IP R&D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지원	최대 2,000천원/건
	▸신규 아이템 우수기술 및 IP창출을 위한 선행기술 조사 지원	최대 1,500천원/건
	▸기술개발 동향 파악 및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특허 분석 지원	최대 3,000천원/건
글로벌 전시회	▸글로벌 전시회 참가 지원 - 대상 : 2023 태국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에너지 저장 전시회(SETA&SSA 2023) - 기간 : 2023.8.17.(목) ~ 19(토) - 장소 : BITEC(방콕) - 분야 : 탄소중립, 에너지저장, 수소, 연료전지 및 배터리, 태양광 등 - 지원항목 : 참가비, 부스 및 공간임차비, 장치비 및 운송료 등	최대 7,000천원/건
홍보물 제작	▸기업 및 제품 홍보용 브로셔, 리플렛 등 실사 출력물 제작/ 온라인 홍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제작	최대 5,000천원/건
R&D사업화	▸R&D 사업화 전략수립 지원(시장, 기술, 정책 등 BM 발굴)	최대 9,000천원/건
	▸R&D 발굴 기획 지원(신규 R&D 발굴 및 기획)	최대 5,000천원/건

○ 프로그램별 지원규모는 평가결과 및 예산에 따라 조정 가능성 있음

○ 지원규모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 예정이며 기업부담금 있음

- 수혜기업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 현금 부담 필요

○ 해당 제품(기술)의 패키지 형태 지원 가능

○ 글로벌 전시회 경우 협력산업 분야 연관제품에 대한 해외수출 실적 또는 예정일 경우 우대함

4 지원방법

○ 수혜기업의 공급기관(업) 제시(*다수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효과증대를 위해 공급기관 변경 가능성 있음*) → 수혜기업의 서비스/제품 완료시 지원기관 검수보고 → 공급기관(업) 대금 지불(*지원기관별*)

※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지원기관의 장이 수혜기업 대금 지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평가 및 선정기준

○ 신청과제의 사전지원제외 여부 검증 후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한 평가위원회 추진(대면 또는 서면 예정)

○ 산술평균에 따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으로 분류하며, 70점 미만인 경우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지표	배점
정량 (30)	기업역량	○ 연구개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또는 연구조직 보유 여부	10
		○ 관련 기술(또는 제품)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10
		○ 재무상태 건실도(최근연도 3개년('20년~'22년))	10
정성 (70)	지원필요성	○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및 적합성	20
	사업화계획	○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사업화 실현 가능성	20
	기대효과	○ 신시장 창출 및 매출증대 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	20
	지원예산	○ 예산 편성의 적정성	10
우대배점	가점 (최대 5점)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특화기업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발급 증명서 제출 기업에 한함)	2
		○ 에너지특화기업지정서 보유 여부	2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한 경우	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기업)로 선정된 기업	3
합계			100

6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내용	일정	주체
통합공고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기업지원 통합공고(지원기관 홈페이지 등)	'23.04.3(월)	광주지역사업평가단
⇩			
신청서 접수	·우편 및 E-mail 접수	'23.04.18(화)限	광주지역사업평가단
⇩			
신청기업 사전검토	·신청기업 역량 등 사전검토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23.04.21(금)限	지원기관
⇩			
선정평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서면평가	'23.04.28(금)限	광주지역사업평가단
⇩			
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	·수혜기업 선정결과 개별통지 ·수정신청서 제출 및 협약체결 (지원기관 ↔ 수혜기업)	'23.05.19(금)限	지원기관
⇩			
지원사업 수행	·지원사업 수행	'23.05.01(월) ~09.29(금)	수혜기업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23.10.16(월)限	수혜기업
⇩			
사후관리	·결과평가 ·수혜기업 성과 및 만족도 조사	'23.11.03(금)限	지원기관

※ 상기일정은 지원사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접수방법

○ 접수기한 : 2023.04.18(화) 18:00시까지 메일 수신 대상에 한함

○ 접수방법 : 접수기한 내 원본 1부, 전자파일(e-Mail) 제출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광주지역사업평가단 김대용 선임(dykim@irpe.or.kr)

○ 문 의 처

지원프로그램	기관명	담당자	전화
IP R&D	광주지역사업평가단	김대용 선임연구원	062-604-9123
제품고급화/인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하태원 연구원	062-600-6521
글로벌 전시회 홍보물 제작	전남지역사업평가단	장수정 연구원	061-339-9725
R&D 사업화	전남테크노파크	김민석 연구원	061-337-5041

8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부수	방법	비고
1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서(견적서 포함)	1부	원본 1부, 전자파일(e-Mail)	필수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 지방세: 민원24(minwon.go.kr) 에서 발급가능	각 1부		
6	최근 3개년('20-'22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	각 1부		
7	4대보험 가업자 명부	1부		
8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9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10	기타 증빙관련 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연구전담인력 현황, 에너지특화기업지정서 등 - 기술(제품) 관련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논문, 인증 등) 자료 - 공장등록증 - 수출실적증명서('20-'22년)(한국무역협회 발급본) - 투자증빙서류(계약서 및 협약서) - 우대배점 관련 증빙서류 등	각 1부		해당시

9 유의사항

- ○ 예산을 초과하는 사항은 기업이 추가 부담하며, 집행기준 및 절차는 지원기관의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진행함
- ○ 선정기업은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지원금은 평가결과와 예산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제외 및 협약 취소가 될 수 있음
-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 ○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참고 1]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이 지원내용과 부합되거나 해당되지 않을 때

② 신청된 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④ 참여제한 여부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산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